

# 한입폭격김치점

## 정 보 공 개 서

[만배식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만배식탁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연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사무소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09, 1층 (남중동)

[대표 전화번호] 1551-7507

[대표 팩스번호] 0504-289-860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1551-7507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만배식탁	한입폭격김치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09, 1층 (남중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7.01	심재현	1551-7507	0504-289-8602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702-15-02092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입폭격김치찜	-
상 호	한입폭격김치찜 OO점	-
상표(서비스표)	<b>한입 폭격 김치찜</b>	출원번호 : 4020250188704 출원일자 : 2025.10.13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141,791,800	-	-
2023년	-	-	-	254,508,408	-	-
2024년	-	-	-	412,331,050	-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심재현	대표	2022.7.1 ~ 현재	대표	기업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업종	사업내용
가맹본부	만배식탁	가맹사업경영	한식	'만배식탁'이라는(등록번호:20241317)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한입폭격 김치찜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자 : 2025.10.13	출원번호 : 4020250188704	심재현	-

※ 당사의 서비스표는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등록되기 전까지 당사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예정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만배식탁	한입폭격김치점	심재현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09, 1층 (남중동)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입폭격김치점	한식	김치점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입폭격김치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한입폭격김치점]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	-	-	-	-	-
2023	-	-	-	-	-	-
2022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한입폭격김치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한입폭격김치점]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만배식탁	만배식탁	20241317	한식	0/1	0/1	3/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한입폭격김치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1.1.~12.31	해당없음	-	-	
광고	소계	-	-	-	-	
	인터넷	-	-	-	-	
	기타	-	-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만배식탁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입폭격김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000				-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
최초교육비	3,300,000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손해배상금 등	가맹계약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9,800,000
가맹비	5,500,000
교육비	3,300,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30,855,000 (부가세 포함)	-		-	홀매장 기준
간판 (시트지작업 포함)	(협력업체)	1,980,000원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사이즈에 따라 변동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24,750,000원	1,650,000원	계약 시 협의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15평 기준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1,925,000원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15평 기준
POS	(협력업체)	임대	-		발주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협력업체)	2,200,000원	-		발주 전 계약취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추가,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정화조, 외부상하수도, 외장추가, 냉난방기, 도시가스설치, 가스온수기, 소방설비 등은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의 점포시설을 직접하는 경우 설계서 등 공사메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3.3㎡당 금 삼십삼만 원

(₩ 330,000 / 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한입폭격김치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660,000원	매월 15일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측이 배분하여 분담	개별 청구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관측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개별 청구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개별 청구	미 시행시 반환	시행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사용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후불로 반환없음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Quality), 서비스(Service), 청결(Cleanliness)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QSC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관리 실태 감독, 효율적인 점포운영 관리를 위한 CCTV열람	1회/3달	문의 : 가맹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상품자재, 설비기기	분기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서 발생하는 가맹비를 받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의 만료,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당사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4년도 기준으로 가맹점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없음					2024년 기준

2) 당사가 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4년 기준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별첨2 [상품(메뉴) 및 서비스가격표]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당사 공급품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별첨2] 참조	※ [별첨2] 참조	월별로 SNS매체를 통해 공지	2025.5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전지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치점 등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만배식탁 한입폭격김치점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b>1km</b> (점포간 이격거리 1km 기준)	가맹계약서 별첨(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b>① 상권의 변화 :</b>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b>② 구매력 변화 :</b>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b>③ 제품 수요변화 :</b>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b>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b> 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관련 계약조문 제41조 제1항</b>	
<input type="checkbox"/>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만배식탁]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b>관련 계약조문 제42조 제1항 (계약일만 해지사유)</b>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채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건 제42조 제2항 (즉시계약 해지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만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적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소정의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한입폭격김치찌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영업표지와 동일한 품목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한입폭격김치찌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① 가맹점사업자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음. ②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영업시간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문의: 가맹관리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단, 교육수료자에 한함)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달	가맹관리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3달		
청결(Cleanness)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3달		

당사는 관리감독 항목에 대한 변경, 감독절차 및 빈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귀하에게 통보 후 관리 감독을 실행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한입폭격김치찌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동의여부 실시 → 해당 가맹점 50%이상 동의시 광고 시행	※ 대중매체 광고,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별도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광고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체결한 광고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실시함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측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관측행사 참여 동의여부 실시 → 해당 가맹점 70%이상 동의시 관측 시행	※ 전체 관측행사  ※ 별도 체결한 관측행사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실시함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및 관측행사의 계획과 문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8조 [비밀유지 누설 등 금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영업 및 운영방법, 종업원 교육 및 훈련,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홍보, 교육, 마케팅 등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제시,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인쇄, 복사, 대여, 누설)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계약조문 제20조 [영업비밀 유지의무]	
①	제8조와 더불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복사, 인쇄, 대여,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사업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하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직원 등에게도 영업비밀을 제공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교육시키고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6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계약조건 제47조 [위약금]	
①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상호, 로고, 디자인, 간판 등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1일당 금 오십만원 (₩500,000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비밀유지 누설 등 금지] 및 제20조[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동종영업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금 일천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초도물품 및 거래품목 공급] 및 제29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등을 자점매입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금 일천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일천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계약종료 후 조치] 제1항을 제외한 다른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 오십만원(₩5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본 정보공개서 10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49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 비용</li> </ul> <p>(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li> <li>(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li>&lt;분할지급시절차&gt;</li>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한입폭격김치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한입폭격김치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강의/ 실습교육	판단하여 필요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매출증대에 관련된 교육/ 매장관리 교육	강의/ 실습교육	판단하여 필요시	선택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한입폭격김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3,3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필요시 실시	실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필요시 실시	실비	선택으로 인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보류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 과거 한식 직영점 1년 경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음

※ 과거 한식 직영점 1년 경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 과거 한식 직영점 1년 경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상품(메뉴) 및 서비스가격표**

상품(메뉴) 및 서비스가격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묵은지등갈비김치찜	28000	월별로 SNS매체를 통해 공지	-
삼겹김치찜	27000		
우삼겹김치찜	26000		
대패삼겹김치찜	25000		
스팸김치찜	25000		
치즈닭갈비도시락	14000		
체육볶음도시락	14000		
1인 삼겹김치찜	14000		
1인 묵은지등갈비찜	15000		
삼겹살 김치찜덮밥	12,000		
우삼겹 김치찜덮밥	12000		

※ 상기 내역은 당사의 영업정책 및 경영방침,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따라 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3] 설비 및 집기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초도물품 및 거래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5]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6]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지필작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